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필요에 따라 ‘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 대응반’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
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코로나19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20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”을 “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”으로 하고, “5월 31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존속 기한) 이 훈령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의3 및 「 <u>2021년 정부조직관리지침</u> 」에 따라 2022년 <u>5월 31일</u>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	제6조(존속 기한) ----- ----- ----- 「 <u>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</u> 」----- <u>12월 31일</u> -----.